서울특별시 유엔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400호

나. 발 의 자 : 한기영 의원 외 11명

다. 발의일자 : 2020년 4월 2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2. 제안이유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선양, 참전국 도시 및 참전국 시민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도시외교의 잠재적인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유엔참전국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시 차원의 참전국 도시와의 교류 및 국제 협력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유엔참전국을 정리하여 해당 국가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별표).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제정안의 개요

 제정안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선양, 참전국 도시와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유엔참전국에 대한 기념과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참전국 도시와의 협력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나. 제정안의 입법 배경

- 제정안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명예 선양,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정부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엔참전용사법")을 제정(2020.3.24.)하여, 시행(2020.9.24.)을 앞두고 있는 바, 이 법에는 '유엔군 참전의 날(7.27)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11) 지정',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유엔참전 전시시설의 건립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였고, 유엔기념공원이 위치한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6・25전쟁 유엔참전국 교류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턴 투워드 부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유엔참전용사 추모행사를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는 국가보훈처의 '해외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에 참여하여
 소속 공무원의 급여 우수리(천원미만 공제) 모금액을 전달하고 있으며,
 '관·군 협치사업'인 '6·25전쟁 상흔 발굴 및 보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유엔참전국이나 유엔참전용사와 관련된 보훈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으며, 담당 조직 또한 부재한 상태임.
- 한편,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국제연합 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88호, 2019.10.19., 한기영 의원 대표 발의)이 회부된 바 있음.
 - 이 조례안에는 시장이 '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으나, 조례안 발의 후에 제정된 「유엔참전용사법」이 '참전국기념 및 교류 지원계획'의 수립권자를 국가보훈처장으로 지정함에 따라

^{1) &#}x27;턴 투워드 부산'은 캐나다 참전용사인 '빈센트 커트니'의 제안으로 2007년부터 시작된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이며, 국가보훈처가 주관하여 매년 11월 11일 11시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시행됨.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국제연합참전국'의 명칭과 정의를 법률에 맞춰 '유엔참전국'으로 수정하여 본 제정안으로 다시 발의하게 되었음.

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제정안은 6・25전쟁 중 전투와 의료지원에 참여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정신과 위훈을 기리고, 유엔참전국과의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을 위한 목적에서 제안되었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²)하고 있고, 「유엔참전용사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이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은 관련 법률과 부합됨.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6·25전쟁" ³⁾을 「참전유공자법」상의 '1950년 6월 25일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3. (생략)

^{4. 6 · 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quot;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규정하고, "유엔참전국"은 '6·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참전국'으로 정의하면서 전투지원국(16개국), 의료지원국(6개국)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유엔참전용사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상의 적용대상 국가를 관련 법률과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임.

[별표] 유엔참전국

구분	국가	구분	국가
전 투지 원 국	가. 미국 나. 영국(아일랜드) 다. 캐나다 라. 터키 마. 호주 바. 필리핀 사. 태국 아. 네덜란드(수리남) 자. 콜롬비아 차. 그리스 카. 뉴질랜드 타. 에티오피아 파. 벨기에 하. 프랑스 거. 남아프리카공화국 너. 룩셈부르크	의 료 지원국	가. 스웨덴 나. 덴마크 다. 인도 라. 노르웨이 마. 이탈리아 바. 독일

비고: 유엔참전국에는 6·25전쟁 당시 영국군으로 분류되어 참전했던 아일랜드와 6·25 전쟁 후 네덜란드에서 분리된 수리남을 포함한다.

(3)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안 제3조는 시장에게 참전국과의 기념행사와 교류협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참전국 기념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는 6・25전쟁 중 북한군에 점령당하고 3개월 만에 수복한 서울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한 자체행사와 기념사업, 참전국 도시와의 직접 교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유엔참전용사법」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지방자치 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4) 참전국 기념 및 교류 지원 사업 등(안 제5조)
- 안 제5조는 참전국 기념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참전국 관련 기념사업,
 ▶참전국 도시와의 교류 및 국제협력 지원 사업, ▶참전국 관련 유적・유물의 발굴・수집・보존・전시 및 홍보 사업, ▶참전 관련 연구, 학술 행사 등 학술활동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나 비영리법인・단체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엔참전용사의 헌신을 선양하고 참전국과의 우호증진 필요성을 서울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별도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방향으로 판단됨.
 - 이 중 '참전국 관련 유적·유물의 발굴·수집·보존·전시 및 홍보사업'은 현재 서울시가 민·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6·25전쟁 상흔 발굴 및 보존 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5) 관계기관과 협력(안 제6조)
- 안 제6조는 시장이 참전국 기념과 교류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 등에 대한 정책은 국가보훈처나 외교부, 국방부등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의 공동협력과 협조가 필수적임을 고려하면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임.

라. 종합의견

- 제정안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헌신한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엔참전국과의 교류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참전국의 기념과 우호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입법 효과가 있음.
- 특히, 2020년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참전국 현지에서도 6.25전쟁 참전관련 행사 등이 활발히 개최되고 있고, 참전용사와 참전국 국민에게 서울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정서를 갖게 하고, 도시간외교의 잠재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6.25전쟁 이후 70년이 지나면서 참전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유엔참전용사법」이 국가보훈처의 사업으로 지정한 사업과 조례안의 사업이 중복될 우려가 있어 사업 시행단계에서 면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됨.

한편, 제정안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참전기념 행사 등으로
 연간 4억 4천만원이 소요되는 바, 2020년 예산에 참전국 기념・교류
 사업의 예산반영이 필요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 범 준	02-2180-8058

[참고자료]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6·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쟁을 말한다.
 - 2. "유엔참전용사"란 6·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군 소속의 군인을 말한다.
 - 3. "유엔참전국"이란 6·25전쟁에 참전한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별표의 국가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 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①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한다.
 - ②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유엔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한다.
- 제6조(기본계획) ① 국가보훈처장은 5년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면유엔참전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 3.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협력 기반 조성 방안
 - 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 5.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
- 6.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관련 국내외 홍보 방안
- 7.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 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시행계획)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엔참전용사의 명예 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과 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의 추진)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6·25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유엔참전용사의 발굴 및 공훈 선양
 - 2. 유엔참전용사의 사망 또는 국내 안장(安葬) 시 예우 및 지원
 - 3. 그 밖에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추모 및 기념 사업
- 제10조(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유엔참전국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 2. 유엔참전국과의 보훈 분야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 3. 보훈제도 관련 국제 공동 연구
 - 4. 유엔참전국과의 인적 교류 및 정보 교환
- 제11조(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 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관·전시관·기념비 등의 유엔참전시설(이하 "유엔참전시설"이라 한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건립 비용 외에 필요한 경우 유엔참전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립 또는 관리 비용의 지원 대상,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유엔참전기록의 발굴·보존 및 활용) ① 국가보훈처장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엔참전에 관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보존된 기록을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
 - 3. 제11조에 따른 유엔참전시설의 건립 지원
 - 4. 제13조에 따른 유엔참전기록의 발굴·보존 및 활용
 -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재외공관에 관련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